

#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93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8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개정이유

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사무 정비를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로 군민 편의를 제고하고, 「경관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정비(안 제10조, 안 제30조)

1) ‘공청회’ 관련 법령 인용 조항 변경

2) 「경상남도 경관 조례」, 「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조문 변경 사항 반영

나.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사무 정비(안 제18조, 별지 제5호서식)

- ‘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’ 붙임서류 중 ‘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’ 삭제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경관법」 제11조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34342(2023. 9. 4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78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8. 28. ~ 2023. 9. 18.(21일간)

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 5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### 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「경관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0조) 공청회에 관한 사항으로, 공청회 근거 조항인 「경관법 시행령」이 전문개정(2022. 11. 1)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18조)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으로,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30조) 경관협정운영회의 심의·자문의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, 관련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흡한 사항 및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8. 원안가결 함.